

## 농기계종합보험

1

### 농기계차량가액 표준화 마련

- 본체(12종), 부속기 3종(트랙터 로터베이터, 베일러, 로우더)

| 201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◇ 형식별 구분이 어렵고 종류가 많아 차량가액 산정이 어려움 | →<br>◇ (기종) 규격별 단순화를 통한 차량가액 표준화 마련 |

※ 부속작업기 3종 이외는 현재 개발중에 있고 3월까지 완료하여 적용 예정

2

### 농기계종합보험 상품개정

- 농기계에 맞는 상품개정 및 자기신체사고 확장 담보 신설

| 2016년        | 201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기계 손해 (자차)  | 농기계 손해 (자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인 I (1.5억원) | →<br><b>대인배상</b><br>(I,II를 통합하여 무한보상) |
| 대인II (무한)    | 자기신체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기신체손해       | (신설) 농기계 상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          |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재농산물위험담보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**농기계상해** : 자기신체손해보다 보장범위 확장형으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  
(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상해 중복가입 불가)

## 2

## 국고보조 및 지방비 확대 지원

- 국고지원 : **전 담보** 보험료의 50% 지원

| 구 분     | 2016년                      | 201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기계 손해  |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<br>보험료 50% 지원 | 가입금액 <b>6천만원</b> 이하<br>보험료 50% 지원 |
| 대인배상 I  | 보험료 50% 지원                 | <b>대인배상</b><br><b>보험료 50% 지원</b>  |
| 대인배상II  | 국고지원 없음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물배상    | 보험료 50% 지원                 | 보험료 50%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기신체손해  | 보험료 50% 지원                 | 보험료 50%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기계상해   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| <b>보험료 50% 지원</b>                 |
| 직재농산물위험 | 국고지원 없음                    | 보험료 50%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지방비 추가 지원

| 2016년           | 201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|
| ◇ 경기도, 강원도, 울산시 | ◇ 경기도, 강원도, 울산시,<br><b>충남, 충북, 전북, 경산시</b> |

※ 지자체별로 지원율이 상이함

## 3

## 자기부담금 개선

-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

- 손해액의 20% 비례형 (최고50만원/최저20만원)

| 201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201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농기계<br>(정액제)<br>2,10,20,30,50만원 中 선택 |            | (정률제)<br>손해액의 20%<br>(최고50만원/최저20만원) |                   |
| 항공<br>방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인헬기<br>드론 | 100,300,500만원<br>中 선택                | 700, 1,000만원 中 선택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, 500만원 中 선택   |

### 농기계 수리시 자기부담금 예시

| 자기부담금<br>손해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    | 100만원 | 300만원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'16년 정액형(1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| 10만원               | 10만원  | 10만원               |
| '17년 비례형(20%,<br>최저 20만원/최고<br>50만원) | 20만원 <sup>주1</sup> | 20만원  | 50만원 <sup>주2</sup> |

- 주) 1. 손해액  $50\text{만원} \times 20\% = 10\text{만원}$  이나, 최저 20만원으로 20만원을  
자기부담금으로 부담
2. 손해액  $300\text{만원} \times 20\% = 60\text{만원}$  이나, 최고 50만원으로 50만원을  
자기부담금으로 부담

## 4

### 계절형 농기계 할증요율 신설

#### □ 연중 특정기간 사용(계절용) 농기계 할증 부가

- 종류 : (6종)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이앙기, 베일러, 광역방제기,  
항공방제기(무인헬기, 드론)
- 보험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기간에 위 농기계별  
특정월의 1일 이상 포함시 단기요율에 각월마다 해당월의 할증율을  
가산 (단, 이 요율은 100%를 초과하지 않음)

### 【단기요율】

| 보험기간 | 7일까지 | 15일까지 | 1월까지 | 2월까지 | 3월까지  | 4월까지  | 5월까지 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단기요율 | 6%   | 10%   | 15%  | 20%  | 30%   | 40%   | 50%   |
| 보험기간 | 6월까지 | 7월까지  | 8월까지 | 9월까지 | 10월까지 | 11월까지 | 12월까지 |
| 단기요율 | 60%  | 70%   | 80%  | 85%  | 90%   | 95%   | 100%  |

### 【계절형 농기계 할증율】

| 농기계   | 5월    | 6월    | 7월    | 8월    | 9월    | 10월   | 11월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콤바인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11.0% | 56.0% | 5.0%  |
| SS분무기 | 7.0%  | 10.0% | 15.0% | 12.0% | 4.0%  | -     | -     |
| 승용이왕기 | 57.0% | 22.0%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베일러   | -     | 2.0%  | -     | -     | -     | 17.0% | 35.0% |
| 광역방제기 | -     | 3.0%  | 25.0% | 30.0% | 2.0%  | -     | -     |
| 무인헬기  | -     | 4.0%  | 27.0% | 25.0% | -     | -     | -     |

예시1) SS분무기 3개월(5월~7월) 단기 가입 시

| 가입금액    | 년간보험료(원) | 단기요율(%) | 계절요율(%)          | 요율 계(%) | 적용보험료(원)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4,117만원 | 375,810  | 30      | 32 <sup>주1</sup> | 62      | 233,000 <sup>주2</sup> |

- 주) 1. 5월(7%) + 6월(10%) + 7월(15%)  
 2. (년간보험료) 375,810원 × (요율 계) 62%

예시2) 콤바인 3개월(9월~11월) 단기 가입 시

| 가입금액    | 년간보험료(원)  | 단기요율(%) | 계절요율(%)          | 요율 계(%)           | 적용보험료(원)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,287만원 | 1,148,490 | 30      | 72 <sup>주1</sup> | 100 <sup>주2</sup> | 1,148,490 <sup>주3</sup> |

- 주) 1. 9월(11%) + 10월(56%) + 11월(5%)  
 2. 단기요율(30%)과 계절요율(72%) 합산요율이 100%를 초과하므로 100% 적용  
 3. (년간보험료) 1,148,490원 × (요율 계) 100%

## 2017년 농기계종합보험 상반기 中 추가 검토 사항

1

### 新 할인 · 할증 제도 도입 예정 ('17.3.1)

- 농기계종합보험의 할인·할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농업인 모두에게 적정 할인·할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사고 농가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줌
- 도입(안)

| 구 분   | 적 용 (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
| 평가기준  | 사고건수 & 손해율(혼합방식)<br>(개인 : 사고건수, 법인,지자체 : 손해율) |
| 평가기간  | 계약 직전 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용 등급 | 1등급 ~ 13등급 (220%까지 할증)_출발등급 5등급               |
| 적용률   | 1사고당 3등급 할증, 무사고시 1등급 할인<br>연간 상한선은 5등급으로 제한  |
| 적용일   | '17년 3월 개정 상품시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

### 「대인배상」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예정 ('17.3.1)

- 2017. 3. 1 약관 개정 시 본 조항 개정

#### ①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신설

-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다. 따라서 민법의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한다.

#### ② 장례비

(현행) 300만원 → (변경 후) 500만원

### ③ 사망 위자료

| 구분               | 현재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사망당시 연령이 만60세 미만 | 45,000,000원 | <u>80,000,000원</u> |
| 사망당시 연령이 만60세 이상 | 40,000,000원 | <u>50,000,000원</u> |

### ④ 장애 위자료

○ 노동능력상실률이 50% 이상인 경우

- 신설 :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후유장해 판정당시<br>피해자 나이가 만60세 미만 | $45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70% | $45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 <u>85%</u> |
| 후유장해 판정당시<br>피해자 나이가 만60세 이상 | $40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70% | $40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 <u>85%</u> |

- 신설 :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인 경우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후유장해 판정당시<br>피해자 나이가 만60세 미만 | $45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70% | $80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 <u>85%</u> |
| 후유장해 판정당시<br>피해자 나이가 만60세 이상 | $40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70% | $50,000,000 \times$<br>노동능력상실률× <u>85%</u> |

### ⑤ 휴업손해

| 현 행              |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1일수입감소액×휴업일수×80% | $\rightarrow$<br>1일수입감소액×휴업일수× <u>85%</u> |

\* 휴업일수는 입원일수임

## ⑥ 간병비 (신설)

- 상해구분상 1~5급에 해당하는 자

| 상해등급  | 인정일수 |
|-------|------|
| 1급~2급 | 60일  |
| 3급~4급 | 30일  |
| 5급    | 15일  |

-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
-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,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함

-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지급

- 피해자의 100% 과실이 아니한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 지급 (2017.3.1 약관개정으로 간병비에 대하여도 적용)

## 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

### □ 농기계 손해사정 방법

- 종결보고서에 손해사정 내역을 따로 작성하지 말 것 ✓
- 수리업체에서 징구한 견적서에 손해사정 할 것  
(부품 : 000원, 공임 : 000원) ✓

### □ 계약장표상의 기대번호와 실제 기대번호가 틀린 경우

- (조사) 피보험자가 다른 농기계 소유 여부 등 바꿔치기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고, 취급자에게 기대번호가 틀리게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 요망
- (기대번호 확인) 실제 기대(제조)번호를 조사하여 보고서에 작성

< 보고서 작성 예 >

| 계약상 기대번호 | 실제 기대(제조)번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(예) 9999 | A1234       |

- (농협) 심사자가 직접 전산에서 기대번호를 변경 등록
- (손사법인)
  - (1) 기계형식표지판에 기대번호를 확인
    - (2) 형식표지판이 없는 기계 (즉 확인이 안되는 경우)  
: 임의부여 → 면세유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기대번호를 보고서에 작성하되, 맨앞에 “농”字를 붙여서 작성 이는 농협에서 임의로 부여한 기대번호로 확인하기 위해서임  
(예시) 농A1234
    - ✓ (3) 초강력스티커 부착

### □ 미결관리

- 불필요하게 서류 미비로 인한 장기미결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- 문제건, 장애율 및 소득으로 합의 지연건 등은 담당자와 신속히 협의할 것

총괄표 작성

✓

| 목적물 | 가입금액 | 보험가액 | 청구금액 | 손해액 | 잔존물 | 자기부담금 | 지급보험금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합계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
- 청구금액 추가 작성 요망

 “농기계(항공방제기 제외)” 사고원인 작성

| ①발생장소 | ②사고유형 | ③농기계 작동상태 | ④사고원인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

**① 발생장소**

논, 밭, 과수원, 시설(하우스), 축사, 집, 농로, 공공도로, 창고/저장고, 하천, 기타(직접기재) 中 1개

**② 사고유형**

전도, 전복, 추락, 충돌, 접촉, 추돌, 후진, 차대인, 도난, 기타(직접기재)

**③ 농기계 작동상태**

농작업 중, 운반이동 중, 작업준비 중, 주정차중, 정비점검 중 1개

**④ 사고원인**

운전자부주의, 기계적·전기적 사고, 눈비 악천후, 급커브, 졸음운전, 운전미숙, 기타(직접 기재)

⇒ 종결보고서 총괄표 보험금 작성란 위에 작성

 항공방제기 사고원인 작성

| ①발생장소 | ②사고유형 | ③농기계 작동상태 | ④사고원인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불필요   |       | 불필요       |       |

- 발생장소와 농기계 작동상태는 관계 없음, 사고유형과 사고원인만 작성

① 사고유형 : 전선추돌, 전주추돌, 나무추돌, 지지선추돌, 통신선추돌, 파이프추돌, 논둑추돌, 하우스추돌, 주택(담장, 지붕)추돌

② 사고원인 : 부조종상 위치 부적절, 장해물확인부족, 제동실패, 안개, 태양, 조정미스, 전파방해, 조종사전도, 부유물, 페이로드 오버(중량), 부조종사신호미스

#### □ 가축 “소”

- 보고서의 이표번호와 첨부서류의 이표번호 일치 확인
- 축산물 이력제상 폐사 등록 여부 확인 후 미등록시 요청
- 질병에 기인한 사고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면책기간 내 사고 여부
- 잔존물 처리 비용 증빙서류 확인 후 첨부 (없을 경우 생략)

#### □ 주말 고액사고 발생 시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

- 발송대상자 : 최기광 단장님, 서재연 부장님, 담당자
- 수임시 및 현장조사 완료 후 추정보험금 꼭 보고할 것

#### □ 수리업체 관리 방안

- 지불보증제도 정착
  - 수리업체 방문시 항상 입고 되면 먼저 분해 하지 말고 농협에 접수번호 확인 후 조사자 입회하에 지불보증 받아서 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
- 잔존물 처리 시 부대비용에 대한 과잉 청구 사례 방지
  - ※ 부대비용이란 : 보관비, 견인비, 견적비용 등
  - 잔존물 시작가 보다 부대비용이 더 큰 경우가 다반사 발생
  - 향후 부대비용 세부 사항 관리 예정
  - 수리업체와 모의하여 부대비용을 일부러 과다하게 청구토록 유도 하는 사례 발생 또한 임의로 유찰마감하게 하여 편법으로 보험금을 횡령

#### □ 대인합의 시 약관기준대로 합의 할 것

- 합의 시 약관기준은 무시하고 예판 즉, 일반배상과 동일하게 합의하지 말고 항상 농협 담당자와 협의하여 예판으로 합의할지 결정함  
(임의로 판단하지 말 것)

자본금 사용

\* 1.300억 원을 차는 회사(2017년)  
list 백화  
17년 10월

□ 풍수해보험 “원예시설” 판매에 따른 인수지원 서비스 시행 예정

○ 손사업체 선정 후 서비스 시행

가족 80%

농가 20% 90%

01. 솔재를 개시
02. 농가에 솔재사를 공동 참여
03. 농가와 솔재사를 협력
04. 자체 납품 확장
05. 솔재제의 유통망

\* 자체로 매각 및 대여하는 방식이 가능  
임대차 및 판매

\* 300억 원 규모로 예상